

##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모집 공고

해외 진출과정에서 발생한 특허 침해·피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 개요

구분		세부 유형	비고
분쟁방어	분쟁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개별대응 또는 공동대응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권리행사	분쟁대응	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개별대응
		특허권보호(무효심판·이의신청 대응)	

□ 지원대상: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등

○ 개별대응: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사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기업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li><li>•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li></ul>
-------	--

## 2. 지원 내용

### 가. 세부 유형별 지원 내용

- 분쟁방어: (신청 가능자) 개별 기업 또는 공동대응 협의체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건당 최대)		필수서류 [붙임4]	모집 방식
			개별	공동		
분쟁 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70백만원	경고장	수시 모집 (Fast Track)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백만원 (1회 지원사)	100백만원 (1회 지원사)	소장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백만원	65백만원	라이선스 계약서	

\* '소송 방어전략' 연간 최대 2억원 한도 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 권리행사: (신청 가능자) 개별 기업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 (건당 최대)	필수서류 [붙임4]	모집 방식
분쟁 대응	특허권행사 (경고장, 소송(제소) 전략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100백만원 (1회지원사)	피침해 증빙	수시 모집 (Fast Track)
	특허권보호 (무효심판, 이의신청) 전략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대응전략	47백만원	이의 무효 심판 청구서	

\* '특허권행사(소송(제소))' 연간 최대 2억원 한도 가능. 해외대리인 비용은 국가별 차등 지원

### 나.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70~50%

구분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수혜자 부담 비율	
			현금	현물
개별 대응	소기업	70%	10% 이상	20% 이하
	중소기업	70%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50%	30% 이상	20% 이하
공동대응		70%	-	30% 이상

\* '소기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은 참여기업 간 분담비율 조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 포함할 것

## 다. 연속지원

- 대상: 기 지원기업·협업체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내용: 연 2회 이내, 최대 3년간 연속지원 가능
  - 우대: 기업·협업체의 선정심사는 면제하되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 타당성만 평가
- \* 반드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되, 수행업무가 중복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불가

## 3.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 가. 모집일정

- 수시모집: '24. 2. 1.(목) ~ 12. 31.(화)
- \* 지원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 해 연중 상시 모집
- 결과 통보: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통보(Fast Track\*)
- \* Fast Track: 분쟁발생으로 지원이 시급한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평균 28일→ 14일 이내)시키는 제도로,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 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기업(소부장 특화단지·일반분야)의 사업신청시 Fast Track 적용

### 나. 수행기관의 결정 방식

- 지정: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협업체/협·단체(이하 “기업 등”)가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전문기관과 함께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여부와 수행기관 선정평가를 동시에 진행
- 공모: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기업 등은 선정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전문기관 POOL 내에서 경쟁입찰에 부쳐 수행기관을 선정

<b>참고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행기관은 지정, 공모과제 신청 시 반드시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li><li>•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추천 요청 시 관련 기술분야 전년도 우수 수행기관(S, A 등급) 안내 가능(ipkoipa@koipa.re.kr로 요청)</li></ul>
--------------	---

## 다. 신청 접수창구

- 지재권분쟁대응센터(<https://www.koipa.re.kr/ipdrc>) > 지원사업 > 특허분쟁 대응전략 > 지원사업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http://www.ip-navi.or.kr)) > 안내·지원 > 지원사업 찾기 > 해외 진출 기업지원 > 사업공고 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사업 신청
- \* 온라인 상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기업·수행기관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현황]

구분	제출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기업 신청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		온라인입력
	1.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양식1,2	○		신청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2.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3] 참조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		
	3.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	
	5. 대상제품 설명자료 [붙임3] 참조	○		
	6.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임3] 참조	○		
	7.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3] 참조 * 협의체 참여기업은 수출국가명 표기(최대 5개국)		○	
	8.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협의체 참여기업은 [붙임7] 지재권 보유현황 확인서 필수 제출	○ 공동대응	○ 개별대응	
	9.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4] 참조	○		
10.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6] 참고4 참조		○		
수행기관 제출서류 (공모과제는 별도안내)	사업수행 신청서(별도작성 불필요) [붙임5] 참조	○		제출완료시 자동생성
	1. 산출내역서	○		온라인 입력
	2.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5] 양식1	○		신청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3.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붙임5] 양식2	○		
	4.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붙임5] 양식3	○		
5.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시 제출)		○		

\* [붙임1]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 [붙임2] 기업 지원사업 신청서(해당내용은 온라인에서 작성함)

\*\*\* [붙임5] 수행기관 사업수행 신청서(해당내용은 온라인에서 작성함)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 4. 세부 운영계획

### 가. 선정기준 및 선정평가 결과 확인([붙임6] 참조)

#### 1) 선정기준: 기업, 협의체, 협·단체 선정심사 결과 80점 이상

##### ○ (지정과제) 수행기관 선정평가 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최종 기준 미달 시 수행기관 변경을 권고하되, 기업 등이 지정 수행기관 선정 요청서 제출 시 검토 후 최종 선정 가능(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및 평가 등 강화)

##### ○ (공모과제) 수행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기술점수(90점) 및 가격점수(1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점수 76.5점 이상(90점 만점) 만 협상 대상자 적격자로 인정

#### 2) 결과 확인: 사업신청페이지의 '지원기업 협약관리'에서 확인

##### ○ 지정과제의 사업비 제안비용은 원가조사결과 및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 공모과제 수행기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나. 유의사항 (필독)

#### 1) 기업, 협의체, 협·단체 지원 불가 사유

##### ① 휴·폐업 기업

#####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③ 분쟁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NPE 제외)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 지점, 사무소이거나 법인인 경우
-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한국 중소기업 또는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⑤ 개별대응 신청기업이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인 경우
- ⑥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 ⑦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이 없거나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 ⑧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2) 수행기관 선정 불가 사유

-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지원사업 투입을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 ③ 해외 전문기관이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수행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④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 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결과가 2년 연속 80점 미만인 전문기관이 동일 기술분야 신청인 경우
- ⑥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b>기업 추천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기업의 추천을 통해 신청·선정된 경우, 추천인에게 주관기관이 제작한 연구보고서 제공 등 혜택 제공</li> <li>• 추천받은 기업이 지원 신청 시, 추천인란에 추천인/기업명/이메일 주소 기재 ※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나, 수행기관의 추천은 해당되지 않음</li> </ul>
<b>기업 및 수행기관 주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수행기관은 협약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약하되,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지급함</li> <li>• IP서비스기관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할 것</li> <li>• 정부지원금이나 기업부담금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 조치함</li> </ul>

< 기업 비밀정보 보호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특허청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 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다. 모집 및 수행기관 결정 방식에 따른 지원 절차



## 라. 문의처

구분	세부 분야	담당자 연락처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5, 5877
	전자분야	02-2183-5876, 5870
	화학분야	02-2183-5878
	공동대응	02-6196-2041
행정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82~6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88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83
	정산 관련	02-2183-5884
기타	이메일 문의	<a href="mailto:ipkoipa@koipa.re.kr">ipkoipa@koipa.re.kr</a>

\*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붙임]

1.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
2. 지원사업 신청서(기업)
3. 증빙자료 및 발급기관 등 안내(기업)
4. 지원유형별 필수서류 안내
5.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
6. 심사 기준 및 유형별 심사·평가 방식 안내
7. 공동대응 협의체 지재권 보유현황 확인서
8.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9.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BIG3 전략품목 리스트
10.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국가전략기술, 백신분야)